

□ 변경 대비표

변경시행일 : 2013년 6월 10일

신한 BNPP 글로벌 ETF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재간접형]

투자설명서 변경 내역

- (1) 기재사항 변경
 - 1 펀드명 변경
 - 2 클래스 명칭 변경 및 신설
 - 3 환매수수료 부과 기간 변경
 - 4 자본시장법 및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5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항목	정정전	정정후
1. 펀드명 변경	신한 BNPP 행동 장기주목마련 글로벌 ETF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재간접형]	신한 BNPP 글로벌 ETF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재간접형] <이하 관련 내용 정정>
2. 클래스 명칭 변경 및 신설: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종류 C1 수익증권 제한없음	종류 C-h1 수익증권 장기주목마련저축 전용 수익증권으로 가입자격을 만 18세 이상으로서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서 가입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1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종류 C2 수익증권 제한없음	종류 C-h2 수익증권 종류 C-h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2년이 되는 날(이하 "전환일"이라 한다)에 종류 C-h2 수익증권으로 전환
(신설)	종류 C-h3 수익증권 종류 C-h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2년이 되는 날(이하 "전환일"이라 한다)에 종류 C-h3 수익증권으로 전환	
(신설)	종류 A1 수익증권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취득자	
(신설)	종류 A-e 수익증권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며,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신설)	종류 C1 수익증권 가입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취득자	
(신설)	종류 C-e 수익증권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이하 관련 내용 정정>	
(신설)	종류 C-i 수익증권 -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 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 투자자 또는 국가 재정법에 따른 기관 및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법인(외국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50억 원 이상 매입하거나 매입한 개인 또는 법인	
(신설)	종류 C-w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일일형 종합자산관리(Wrap)계좌를 보유한 자 - 법제8조제7항에 의한 신탁업자 -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투자자	
2. 클래스 명칭 변경 및 신설: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 종류 C1 수익증권 2. 종류 C2 수익증권 3. 종류 C3 수익증권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 종류 C-h1 수익증권 2. 종류 C-h2 수익증권 3. 종류 C-h3 수익증권 4. 종류 A1 수익증권 5. 종류 A-e 수익증권 6. 종류 C1 수익증권 7. 종류 C-e 수익증권 8. 종류 C-i 수익증권 9. 종류 C-w 수익증권 <세부 보수 내역 생략>
3. 환매수수료 부과기간 변경: 제2부 11. 매입 및 환매 기준	제2부 11. 매입 및 환매 기준 나. 환매 (3) 환매수수료 ① <생략> 이 투자신탁은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며,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별로 다음과 같이 환매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부과된 수수료는 환매대금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A.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제2부 11. 매입 및 환매 기준 나. 환매 (3) 환매수수료 ① <생략> 이 투자신탁은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며,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별로 다음과 같이 환매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부과된 수수료는 환매대금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1. 종류 A1 수익증권, 종류 A-e 수익증권 A. 30일 미만 환매 시 이익금의 10% 2. 종류 C1 수익증권, C-e 수익증권, C-h1 수익증권, C-h2 수익증권, C-h3, C-i 수익증권, C-w 수익증권 A. 30일 미만 환매 시 이익금의 70% B. 30일 이상 90일 미만 환매 시 이익금의 30%
4. 자본시장법 및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하 생략>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하 생략>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하 생략>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내용을 자투자신탁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에 포함하여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하 생략>

<p>4. 자본시장법 및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나. 수시공시</p>	<p>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www.shbnpam.com)·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유용인력의 변경 2. ~ 10. <생략></p>	<p>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www.shbnpam.com)·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유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유용인력의 유용경력(유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 10. <현행과 같음></p>
<p>4.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p>	<p>제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1)-(2) <생략>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인 경우 해당사항이 없음</p>	<p>제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1)-(2) <생략>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 <삭제></p>
<p>5.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p>	<p>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p>	<p>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최근현황경시 (기준일: 2013년 04월 30일)</p>

-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내역
(1) 기재사항 변경
1 펀드명 변경
2 클래스 명칭 변경 및 신설
3 환매수수료 부과 기간 변경

항목	정정전	정정후
1. 펀드명 변경	신한 BNPP 행동 장기주액마련 글로벌 ETF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재간접형)	신한 BNPP 글로벌 ETF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재간접형) <이하 관련 내용 정정>
2. 클래스 명칭 변경 및 신설: 제2부 1. 보수 및 수수료	<p>제2부 1. 보수 및 수수료 가.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p> <p>종류 C1 수익증권 제한없음</p> <p>종류 C2 수익증권 제한없음</p> <p>종류 C3 수익증권 제한없음</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2부 1. 보수 및 수수료 가.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p> <p>종류 C-h1 수익증권 장기주액마련전용 전용 수익증권으로 가입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서 가입 당시 주액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서 가입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1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p> <p>종류 C-h2 수익증권 종류 C-h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2년이 되는 날(이하 "전환일"이라 한다)에 종류 C-h2 수익증권으로 전환</p> <p>종류 C-h3 수익증권 종류 C-h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2년이 되는 날(이하 "전환일"이라 한다)에 종류 C-h3 수익증권으로 전환</p> <p>종류 A1 수익증권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취득자</p> <p>종류 A-e 수익증권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며,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p> <p>종류 C1 수익증권 가입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취득자</p> <p>종류 C-e 수익증권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p> <p><이하 관련 내용 정정></p> <p>(신설)</p> <p>종류 C-i 수익증권 -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 투자자 또는 국가 재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외국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50억 원 이상 매입하거나 매입한 개인 또는 법인</p> <p>(신설)</p> <p>종류 C-w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일일형 종합자산관리(Wrap)계좌를 보유한 자 - 법제8조제7항에 의한 신탁업자 -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투자자</p>
2. 클래스 명칭 변경 및 신설: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p>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p> <p>1. 종류 C1 수익증권 (신설)</p> <p>2. 종류 C2 수익증권 (신설)</p> <p>3. 종류 C3 수익증권 (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p> <p>1. 종류 C-h1 수익증권</p> <p>2. 종류 C-h2 수익증권</p> <p>3. 종류 C-h3 수익증권</p> <p>4. 종류 A1 수익증권</p> <p>5. 종류 A-e 수익증권</p> <p>6. 종류 C1 수익증권</p> <p>7. 종류 C-e 수익증권</p> <p>8. 종류 C-i 수익증권</p> <p>9. 종류 C-w 수익증권</p> <p><세부 보수 내역 생략></p>
3. 환매수수료 부과기간 변경: 제2부 1. 보수 및 수수료	<p>제2부 1. 보수 및 수수료 나.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환매수수료 A. 90일 미만: 이익금의 70%</p>	<p>제2부 1. 보수 및 수수료 나.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환매수수료</p> <p>1. 종류 A1 수익증권, 종류 A-e 수익증권 A. 30일 미만 환매 시 이익금의 10%</p> <p>2. 종류 C1 수익증권, C-e 수익증권, C-h1 수익증권, C-h2 수익증권, C-h3, C-i 수익증권, C-w 수익증권 A. 30일 미만 환매 시 이익금의 70% B. 30일 이상 90일 미만 환매 시 이익금의 30%</p>

<p>2. 클래스 명칭 변경 및 신설: 제39조 (보수)</p>	<p>제39조 (보수) ①~② ③ 1. 종류 C1 수익증권 2. 종류 C2 수익증권 3. 종류 C3 수익증권 (신설) (신설) (신설) (신설)</p>	<p>제39조 (보수) ①~② ③ 1. 종류 C-h1 수익증권 2. 종류 C-h2 수익증권 3. 종류 C-h3 수익증권 4. 종류 A1 수익증권 5. 종류 A-e 수익증권 6. 종류 C1 수익증권 7. 종류 C-e 수익증권 8. 종류 C-i 수익증권 9. 종류 C-w 수익증권</p> <p><세부 보수 내역 생략></p>
<p>2. 클래스 명칭 변경 및 신설: 제40조 (판매수수료)</p>	<p>제40조 (판매수수료) 이 수익증권의 판매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제40조 (판매수수료) ① 판매회사는 종류 A1 수익증권 및 종류 A-e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한다. ② 종류 A1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의 100분의 1.00 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한다. ③ 종류 A-e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0.50 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한다. ④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율은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한다.</p>
<p>3. 환매수수료 부과기간 변경: 제41조 (환매수수료)</p>	<p>제41조 (환매수수료) ① <생략> 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A. 90일 미만: 이익금의 70%</p>	<p>제41조 (환매수수료) ① <생략> 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종류 A1 수익증권, 종류 A-e 수익증권 A. 30일 미만 환매 시 이익금의 10% 2. 종류 C1 수익증권, C-e 수익증권, C-h1 수익증권, C-h2 수익증권, C-h3 수익증권, 종류 C-i 수익증권, 종류 C-w 수익증권 A. 30일 미만 환매 시 이익금의 70% B. 30일 이상 90일 미만 환매 시 이익금의 30%</p>
<p>4. 자본시장법 및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50조 (공시 및 보고서 등)</p>	<p>제50조 (공시 및 보고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2. ~ 5.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제3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 ~ ⑩ <생략></p>	<p>제50조 (공시 및 보고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 5.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에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제3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 ~ ⑩ <현행과 같음></p>